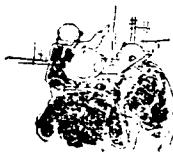


## 論 壇



### 1. 序 言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韓國保險公社는 1977年 12月 31日 改正保險業法이 法律 第3043號로 公布된에 따라 設立되어 1978年 3月 2일부터 業務를 開始하였다.

우리나라의 保險產業이 本格的인 軌道에 들어간 것은 1962年 保險業法이 制定, 公布된以後부터 라고 하겠다. 그 以後 우리나라의 保險產業은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구준한 成長을 거듭하여 이제는 아세아 第2位, 世界 第25位의 保險大國으로 成長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驚異的인 成長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制度와 運營面에서는 改善, 補完되어야 할 點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量的 成長에 副應하여 保險加入者 保護機能의 補完, 保險產業의 國際競爭力強化 등과 같은 質的인 面에서의 補強이 切實하게 되었으며 特히 高度經濟成長에 힘입은 國民所得의 增加와 經濟의 安定에 따른 國民의

# 韓國保險公社의

# 任務와 業務概要

鄭 龍 善

<韓國保險公社・理事>

未來指向의 意識構造의 形成 등에 基因하여 앞으로 急增하게 될 새로운 保險需要를 效果的に 뒷받침할 制度의 整備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또한 國民經濟의 開放趨勢와 金融의 國際화와 같은 周邊與件의 變化에 따라 우리 保險產業도 國際競爭力의 補強이 時急히 要望되었으며, 이에 政府에서는 1976年부터 「保險產業의 近代化」란 旗幟를 내걸고 우리 保險產業이 안고 있는 諸般問題點을 補完하여 80年代의 高度產業社會를 向한 經濟, 社會與件의 變化에 알맞은 受容態勢를 갖추도록 強力한 그 改善策을 推進하였다.

昨年부터 始作된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內資動員의 極大化와 社會開發機能의 擴充을 그 基調로 삼고 있는바, 國民所得水準의 向上과 經濟社會의 安定趨勢에 따라 社會保障機能의 擴充과 金融的機能을 同時에 갖고 있는 保險의 特性으로 因하여 保險產業은 다른 어느 分野보다도 國民經濟上 그 重要性이 漸高하고 있다고 하겠다.

韓國保險公社는 이와 같은 諸般與件을 그 背

景으로 하여 設立되었는바, 그 經緯를 보던,  
78年 1月 5日 韓國保險公社 設立委員會의 構成에 이어, 78年 2月 6日 財務部長官의 定款 承認을 얻은後, 78年 2月 27日 特殊法人 第233號로 登記함으로써 無資本特殊法人으로 設立되어, 78年 3月 2일 그 業務를 開始하게 된 것이다.

## 2. 韓國保險公社의 任務

韓國保險公社의 設立目的은 保險業法 第160條에서 「이 法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을 指導・育成하고, 特定한 原保險 및 再保險事業을 營爲하게 하기 위하여 韓國保險公社를 設立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當公社의 設立目的과 그 任務는,

첫째, 保險事業의 指導, 育成과  
둘째, 特定한 保險事業의 營爲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公社의 業務에 관하여는 法第179條에서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列舉하고 있다.

- (1) 保險事業者 其他 이 法에 의하여 公社의 檢查를 받아야 할 者에 대한 檢查
  - (2) 基礎書類의 審議
  - (3) 保險募集人の 登錄과 管理
  - (4)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原保險事業의 營爲
  - (5)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한 再保險의 引受
  - (6) 政府가 營爲하는 保險의 再保險 또는 法律에 의하여 運營되는 共濟事業의 再共濟業務
  - (7) 政府代行業務와 政府로부터 委任받은 業務
  - (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에 이 法에 의하여 賦與된 業務
- 그 以外에 法 第180條 내지 第184條에서 保險

에 관한 調査, 統計業務와 保險料率審議委員會, 保險紛爭審議委員會의 設置, 保險研修院의 設置, 運營 및 國際協力 業務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 가. 保險事業의 指導・監督에 관한 機能

公社의 保險事業에 관한 指導, 監督機能은 公社의 設立目的에서도 明白히 規定되어 있거니와 이것이 바로 公社의 業務 中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機能은 다시 檢查에 관한 機能, 基礎書類의 事前審議機能, 保險紛爭의 審議・調停 및 保險募集人の 登錄과 管理에 관한 機能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 (1) 檢查에 관한 機能

公社의 檢查에 관한 機能은 保險事業者에 관한 것과 保險代理店, 保險仲介人, 保險計理人, 損害査定人 및 保險協會 등 其他 保險關係團體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가) 保險事業者에 관한 檢查

保險事業者は 法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와 財產狀況에 관하여 公社의 檢查를 받아야」 한다. 이 檢查權은 保險事業者の 業務와 財產狀況에 관한 全般的인 事項이 모두 그 對象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바, 保險契約의 募集에서부터 保險金支給에 이르는 保險業務와 資產運營에 관한一切의 것이 모두 檢查의 對象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公社는 檢查結果 그措置에 대한 意見書를添附하여 財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法 第14條 第4項) 다만 財務部長官은 公社가 檢查를 實施한 結果 「保險事業者が 法令 또는 保險業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거나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公社의 社長으로 하여금 그

事由에 따라當該保險事業者에 대하여理事, 監事 또는 代表者の解任其他必要한措置를 要求하게 할 수 있으며(法第20條第2項) 또한 法第209條의 规定에 의하면 그 權限의 一部를 公社의 社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므로 委任된範圍內에서는公社의 社長은 檢查結果에 대한措置權도 가지게 되어 있다. 그以外에도公社는 法第180條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保險事業者の業務와 財產狀況에 관한報告를 하게 할 수 있으며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 (나) 保險代理店 등에 관한 檢查

公社는 法第151條의 规定에 의하여 保險代理店과 保險仲介人에 대하여 또 第199條에 의하여 保險協會, 第201條의 规定에 의하여 其他保險關係團體, 第207條의 规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에게 雇傭되지 아니한 保險計理人 및 損害査定人에 대하여도 保險事業者에 대한 경우와 同一하게 檢查를 할 權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2) 基礎書類의 審議機能

保險事業者が 定款을 除外한 基礎書類의 變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公社에 設置된 保險料率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財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法第7條第2項). 그리고 法第181條에서는 保險料率審議委員會의 設置에 관하여 规定하고 있으며 同法施行令第41條에서는 이 委員會의 構成에 관하여 规定하고 있는 바 委員長, 副委員長各1人을 包含하여 11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公社의 副社長中에서, 副委員長은公社의 理事中에서 각각公社의 社長이 指名하는 者가 되고 其他의 委員은 學界, 法曹界, 및 保險業界的學識, 經驗이 豐富한 者와 保險計理人 및 保險契約者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으로公社의 社長이 委屬하는 者가 되도록 规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保險募集人은 모두公社에 登錄을 하게 되고公社는 그 登錄過程에서 嚴格한 審查를 通하여 不適格者를 찾아내어 保險募集人을 精銳化

가 되도록 规定하고 있다.

#### (3) 保險紛爭의 審議・調停機能

法第182條에서는 「公社는 保險事業者와 保險契約者, 被保險者其他利害關係人과의 사이에 發生한 保險契約에 關한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保險紛爭調停機關을 設置, 運營할 수 있도록」規定하고 있다. 또한 同法施行令第44條에는 保險紛爭調停機關으로서公社에 保險紛爭審議委員會를 두도록 规定하고 있는 바, 이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11人以內로 構成하되 委員長은公社의 副社長中에서公社의 社長이 指名하는 者가 되고 委員은公社의 理事中에서 社長이 指名하는 者 1人, 學界, 法曹界 및 保險業界的學識, 經驗이 豐富한 者와 損害査定人, 保險契約者 및 醫師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으로公社의 社長이 委屬하는 者가 되도록 规定하고 있다. 勿論 이 委員會의 性格이 訴訟節次와는 關係가 없는 任意選擇的紛爭調停機關이기는 하나 裁判以前에 第3者的立場에 있는公社의 委員會에서 簡單한 节次로서 保險紛爭을公正하게 仲裁, 調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保險契約者的 權益을 保護하고 信賴받는 保險風土를 造成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고 보겠다.

#### (4) 保險募集人の 登錄 및 管理機能

法第146條에는 「保險募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公社에 登錄하여야 하도록」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施行令第22條와 同法施行細則第44條에서는 登錄申請의 节次와 添附書類를 规定하고 있으며 同法施行令第23條에는 保險募集人이 될 수 있는 者의 登錄要件을 规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保險募集人은 모두公社에 登錄을 하게 되고公社는 그 登錄過程에서 嚴格한 審查를 通하여 不適格者를 찾아내어 保險募集人을 精銳化

## 論 壇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特定保險事業의 營爲

公社가 營爲하게 될 保險事業의 範圍에 關하여는 法 第179條 第4號 내지 第6號와 同法施行細則 第52條에서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財務部長官은 78年 2月 28日 公社가 營爲할 原保險事業으로,

첫째, 海外 勤勞者에 대한 勤勞者災害補償責任保險

둘째, 潘地域의 原保險

셋째, 사우디 地域 進出 韓國企業體에 대한 建設工事保險을 指定하였다.

그리고 公社가 營爲하는 再保險事業에 關하여 첫째, 公社는 海外 就業勤勞者에 대한 規程에 의하여 營爲하는 災害補償保險事業의 保險契約金額 中 100分의 70에相當하는 金額 以上을 專業再保險事業者에게 再保險에 붙여야 하며,

둘째, 公社의 再保險事業의 範圍는 再保險者가 引受한 年間保險契約의 國內保有(公社 保有分 除外) 超過額에相當하는 保險料 總額의 100分의 20 以內에서 引受하도록 하고 다만 이 경 우 1危險當保有限度額은 保險事業基金의 100分의 10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說明한 特定保險事業은 國內保有能力을 增大함으로써 海外收支逆調를 改善하고 一般民營 保險事業者가 營爲하기 어려운 特殊한 社會政策保險을 國家的 次元에서 營爲하게 하여야겠다는 政策的 配慮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다. 其他 業務 協助 機能

公社는 上述한 機能 以外에도 保險에 關한 調查統計와 資料蒐集(法 第180條), 保險從事人의 資質向上을 위한 保險研修院의 運營(法第183條) 및 保險에 關한 國際機構와의 交涉業務 등의 機

能을 가지고 있다. 即 公社는 保險에 關한 調査研究와 統計業務를 行하고 이에 關한 刊行物을 發刊하여 政府의 保險政策의 樹立에 必要한 情報와 資料를 提供하고 保險事業의 發展에 寄與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또한 公社는 保險人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保險에 關한 專門的인 知識을 普及하기 위하여 保險研修院을 設置·運營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官의 指示를 받아 保險에 關한 國際機構와의 交涉業務를 行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 3. 韓國保險公社의 1978年度 業務概要

以上으로 公社의 主要 任務와 機能에 關하여 保險業法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는 바 以下에서는 公社의 1978年度 基本運營指針과 主要業務概要에 關하여 簡單히 論述하기로 한다.

#### 가. 1978年度 基本運營指針

公社가 1978年度 中에 重點的으로 推進하려나갈 三大 基本運營指針은 다음과 같다.

첫째, 保險募集秩序의 淨化에 注力할 것이다. 保險契約에 있어 募集이란 가장 基本的인 것이고 重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保險募集에 있어서 우리 業界가 안고 있는 問題點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現實的으로 가장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 스카웃 問題와 不實募集의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同業者 間에 優秀한 募集人의 確保를 위한 過當競爭이 保險募集秩序를 흐리게 하는 深刻한 問題이다. 勿論 이디 오래 前부터 生保社 間, 損保社 間에 保險募集秩序 改善을 위한 協定이 締結되어 있기는 하나 事實上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實情인 것 같다.

다음으로는 保険內容의 歪曲說明, 融資條件附募集 등과 같은 不正話法에 의한 下實募集行爲, 募集人の 資格이 없는 者에 의한 不法募集行爲 등의 不實募集行爲로 因하여 保險契約者에게 不當한 被害를 주는 경우가 있어 保險에 대한 國民의 認識을 흐리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保險募集秩序를 淨化하는 것이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問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둘째, 保險經營의 內實化를 促進할 것이다.

이제 우리 國民의 生活水準은 持續된 高度의 經濟成長에 힘입어 相當한 水準에 到達하였는 바, 「豫測할 수 없는 來日을 위한 對備」인 保險이 一般大衆의 生活化가 될 段階에 이르른 것 같다. 따라서 우리 保險業界는 바야흐로 스스로의 內實을 다져서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公益企業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公社는 保險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保險業界를 指導·育成할 責務를 맡고 있는 바, 信賴받는 保險風土의 造成을 위하여 保險經營의 內實化를 促進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保險人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保險人 중에서도 保險募集人の 資質向上의 問題가 現實的으로 가장 深刻한 問題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保險에 대한 一般 國民의 認識이 否定的이고 保險募集人們의 收入이 主로 不定期의 인募集手當에 依存하고 있으며 그 水準도 極히 미미한 狀態에 있어 保險募集인이 專門知識人으로서의 位置에 定立되어 있지 못한 實情이다. 이에 지난번 政府에서는 保險募集人の 資格制度를 導入하여 一定한 研修를 거친 후 協會에서 實施하는 試驗에 合格한 者로 制限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保險募集人에 의한 不實募集行爲가 殘存하고 있어 保險認識의 刷新에 沮害要因

이 되고 있는 바 公社는 이와 같은 募集人の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努力할 것이며 또한 保險計理人이나 損害查定人과 같은 保險專門人の 育成에 힘쓸 것인 바, 이를 위하여 公社의 保險研修院의 研修課程을 強化할 計劃이다.

## 나. 主要業務 概要

1978年度 公社의 業務에 관하여는 審議制度, 檢查活動, 保險募集秩序淨化, 調查活動, 非營利性 保險事業 및 保險研修活動의 順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1) 公正한 審議制度의 定立

公社에 設置되어 있는 保險料率審議委員會와 保險紛爭審議委員會의 運營을公正히 遂行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同委員會의 運營上의 基本方向은,

첫째, 保險料率의 審議는 科學的 統計資料에 의하여 審議하되 料率의 自律性을 尊重하고 Dumping Rate를 止揚하며 料率相互間의 衡平을 維持할 수 있도록 審議함으로써 公正한 審議基盤을 造成하도록 하고,

둘째, 保險紛爭은 紛爭當事者에게 參與機會를 賦與하여 充分한 意見陳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保險契約者の 權益을 最大限으로 保障할 수 있도록 公正한 立場에서 保險紛爭을 調停할 것이다.

保險料率審議委員會는 78年 3月 23日에 構成되어 그 以後 業務를 遂行하여 왔으며 그 동안 2回에 걸쳐 總 9件을 審議하였는 바, 그중 7件은 可決되고, 1件은 否決, 또 1件은 保留되었다. 保險紛爭審議委員會는 78年 3月 24日 構成되어 그 以後 業務를 遂行하여 왔으며 그 동안 2回에 걸쳐 總 4件을 審議하였는 바, 그중 1件은 支給 1件은 棄却, 2件은 保留되었다.

## 論壇

保險料率審議委員會와 保險紛爭審議委員會의構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保險料率審議委員會

委員長：公社 監督擔當 副社長

委員：業界代表 3名

保險契約者 代表 3名

學界代表 1名

法曹界代表 1名

保險計理人代表 1名

公社 理事 1名(計 10名)

### ○ 保險紛爭審議委員會

委員長：公社 監督擔當 副社長

委員：業界代表 2名

保險契約者 代表 2名

學界代表 1名

法曹界代表 2名

醫師代表 1名

損害查定人代表 1名

公社 理事 1名(計 10名)

## (2) 檢查活動

公社의 가장重要的業務 중의 하나는 保險事業者, 保險協會, 保險代理店, 其他 保險關係團體 등에 대한 檢查機能이다.

公社는 檢查業務의 基本方向으로,  
첫째, 保險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한 指導·  
育成에 力點을 두고,

둘째, 保險業界에 殘存하고 있는 痞疾的 病弊要因을 摘出, 改善함에 注力하여,

셋째,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등의 權益을 最大限으로 保護함에 두고 있다.

公社는 檢查業務의 效率的 遂行을 위하여 檢查業務規程을 作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바 있으며, 이에 의하면 檢查의 方法은 實地檢查를 原則으로 하되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書類 등의 提出을 받아 書面檢查를 할 수 있도록 規程하고 있다.

當公社의 檢查는 基本檢查計劃에 따라 年 1回以上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定期檢查와 特定한 事項에 대하여 必要性이 있을 때마다 隨時로 實施하는 隨時檢查가 있는 바, 今年度의 定期檢查는 5月부터 實施될豫定으로 있다.

## (3) 保險募集秩序 淨化運動

保險募集秩序의 淨化는 今年度當公社가 推進할 三大 重點事項의 하나이다. 이를 위한 基本 方向으로는,

첫째, 保險募集人の 職能化를 促進하고,  
둘째, 保險代理店을 專業大型代理店으로 段階的으로 指導·育成하여,  
셋째, 保險募集形態를 近代的인 方法으로 轉換하도록 함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基本方向에 따라當公社는 우선 保險募集人の 登錄管理制度를 確立할 것이다.

保險業法의 改正으로 保險募集人の 登錄制度가 財務部로부터 公社로 그 登錄機關이 變更되었으며 또한 募集人の 登錄資格要件도 「保險募集에 관한 研修를 履修하고 協會에서 施行하는 試驗에 合格한 者」나 「保險關係機關에서 1年以上 從事한 者」로 制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公社는 保險募集人の 新로운 登錄證으로의 更新을 늦어도 6月 10日까지는 完了하고 公告를 할豫定으로 있다. 그리고 登錄更新 時나 新規登錄 時에 資格要件를 嚴格히 審查하여 二重登錄者나 不適格 募集人을 索出함으로써 保險募集人の 資質을 向上시키고 精銳化시켜 나갈 것이다.

그 다음으로 保險代理店에 관하여는 78年 4月 1日 財務部長官으로부터 “損害保險代理店管理規程”이 示達되었는 바 이 規程에 의하여 損害保險代理店의 許可 및 管理監督權限이 財務部長官

으로부터公社의社長에게委任되었다. 이러한權限의委任은法第209條에根據를둔것인바이에따라앞으로는保險代理店의許可와management監督은公社의社長이掌管하게되었다.

#### (4) 調査活動

保險產業의健全한發展을위하여迅速·正確한調查活動을展開하여나갈것이다.

그基本方向으로는,

첫째,國內外保險市場의各種保險關係資料를調查,蒐集,分析하고

둘째,諸般資料및各種統計를迅速正確하게作成하이

셋째,政府의保險政策樹立時에有用한資料를供與하며또한各保險事業者,協會등保險關係機關에서資料로活用할수있도록하고자함에두고있다.그리고今年度調查活動強化方案의一環으로保險센서스를實施하여保險加入者の保險認識度를測定하고國民의保險選好性向을把握함으로써保險의大衆化促進을위한資料를蒐集할것이다.

今年度에發刊할各種資料로서는77年度年次報告書를78年4月24日出刊하였고保險調查月報의創刊號(3月分)를既히發行하였으며앞으로保險年鑑은8月頃,英文保險業法은6月頃,INSURANCE IN KOREA는7月頃,韓國의保險產業은9月頃에各各發行할豫定으로있으며그以外의各種資料는隨時로作成,發表할것이다.

#### (5) 非營利性保險事業活動

公社가營爲할非營利性特定保險事業의營爲를위하여海外關係當局과去來社에대한通報및再保險株式會社와의再保險協約을締結하였

다.参考로再保險引受件當保有限度를보면火災는60萬\$,機械는30萬\$,航空은60萬\$이다.또한原子力保險의營爲를위하여그基礎書類를78年4月7日에財務部長官의認可를얻었으며共濟事業에대한再共濟의開發을위하여그에대한市場調查와引受에따른業務協議를推進중에있다.

#### (6) 保險研修活動

끝으로公社의保險研修院의研修活動을強化實施할것이다.

當公社는研修의basic direction을保險事業者의資質向上과保險專門人養成에두고이를推進하고있다.이에따라保險研修院運營規程이制定되었는바,이에의하면保險研修院은運營委員會의決議에의하여自律的으로運營하게되어있다.即運營委員會는公社의研修擔當理事를委員長으로하고公社의研修院事務局長과保險學會代表2人및各研修對象機關의任員各1人으로總25人以內의委員으로構成하게되어있으며이委員會는基本研修計劃의樹立,研修經費豫算및決算의審議그리고研修經費分擔金의配分및徵收에관한事項등을審議하도록되어있다.그리고研修에所要되는經費에관하여는事務室,講議室의賃借保證金,賃借料,什器,備品및任職員의給與등의固定經費는公社의分擔으로하고그以外의一般研修에所要되는經費는收益者負擔原則에따라研修對象機關에서分擔,充當하도록規定하고있다.

今年度의研修計劃은一般課程5回에250名,專門課程14回에640名,그리고特別課程7回에420名合計26回에總1,310名을研修할計劃으로있다.

#### 4. 結 言

以上으로 當公社의 設立背景과 任務 그리고 今年度의 業務概要에 대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現今 우리의 經濟社會的 與件은 國民所得의 劃期的 增大에 힘입어 「來日을 向한 餘裕」가 생겨가고 있으며 이에 우리 保險產業은 來日의 不安에 對備하는 公益的 國民企業으로 成長함에 適合하게 諸般與件이 造成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덧붙여 急變하는 經濟社會的, 國內外的 與件에 슬기롭게 對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最近에 있은 一連의 새로운 體制로서의 變革은 保險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크게鼓舞的인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保險產業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들은 肯定的인 姿勢로서 그리고 보다 創意的이고 進取的인 姿勢로서 이를

받아 들이고 前보다 一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맡은 바 責務를 다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一大 變換期에 處하여 있는 이 時點에서 保險產業의 健全한 指導·育成이란 莫重한 所任을 맡고 있는 韓國保險公社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責任의 무거움을 實感하고 있는 바이다.

公益性, 社會性이란 保險의 特性을 勘案하여 볼 때 保險產業은 保險加入者の 權益을 위해서努力하는, 한편 大衆에게 歡迎받고, 大衆의 生活 속에서 함께 숨쉬는 國民의 公益企業으로서의 保險產業으로 定着, 成長할 때만이 健全한 發展이 期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 保險人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姿勢를 가지고 合心하여 努力하고 각者が 맡은 바 責務를 다하여 나갈 때 우리 保險產業의 來日은 밝을 것임을 確信하는 바이다.

海外 토픽

#### 女性도 消防員 가능

(프랑스서 公式許可)

프랑스정부가 여성도 남성과 꼭같이 소방서원으로 일할수있다고 허가함으로써 프랑스 남성들만의 아성이 또 하나 무너졌다.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관보를 통해 공식발표했는데 「데프랑스와·아비유」라는 가정주부가 소방서원 모집에 응모했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후 투쟁을 벌여온지 2년만에 마침내 승리를 거둔것이다.